

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8. 20.(수), 10:10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」 제정에 관한 건(2008-26-107)

- 이효진 디지털전환과장의 보고를 받고, 「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」에서 고시로 위임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 부착 대상 제품, 표시 및 광고내용, 부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(안)에 대해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의결함.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 고시제정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.

※ 고시(안) 주요내용

- 가. 안내문 부착 대상제품은 지상파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(안 제3조)
- 나. 안내문 표시 및 광고내용은 아날로그방송 종료일,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 기기 부착, 안내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표시(안 제4조)
- 다. 안내문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는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모니터의 전면에 부착하되, 제조업자는 제조일, 수입업자는 통관일 기준 시점에 부착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시행일은 고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안 부칙)

2) 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」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(2008-26-108)

-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35조에 따라 시청자 불만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위원 등 위촉 후보자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원안 의결함.

※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(9명)

분야	성명	성별	전·현직
위원회	형태근	남	방송통신위원회 위원
방송 등 언론분야	조의진	남	전 KBS 제작본부장
	성기현	남	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
	박원재	남	동아일보 논설위원
교육·문화계	박동숙	여	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
	김대호	남	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
법조계	최태형	남	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
시청자단체	김태현	여	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
기타 전문가	조연하	여	이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

3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「쿠키미디어(주) 등 2개사」 (2008-26-109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등록신청한 쿠키미디어(주)와 (주)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내용에 대해 원안 의결함.

※ 주요내용

법 인 명	채 널 명	방송분야
쿠키미디어(주)	쿠키TV(KukiTV)	취업·창업·웰빙 (텔레비전)
(주)다음커뮤니케이션	다음고(Daumgo)	스포츠·연예 (데이터)

4)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(안) 제정에 관한 건(2008-26-110)

- 김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 업무를 전략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」 제정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주요내용

- 가. (설치)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으로 상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「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）」를 설치하도록 함
- 나. (구성)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산·학·연 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, 특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법제·방송·통신·융합·전파·정보보호 등 분야별 작업반을 둘수 있도록 함
- 다. (업무) 특별위원회는 방송·통신·융합·전파 및 정보보호 분야 규제개혁 정책방향, 법제선진화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
- 라. (운영)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, 심의·의결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다른 전문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어야 함
- 마. (규제개혁 평가단 운영)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·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함

사. 보고사항

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관한 사항

-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법적 규제

장치를 마련하고,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부처기능 조정과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라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전부와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일부를 “정보통신망법”으로 통합 규정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, 관계 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.

※ 주요내용

- 가.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방통위 소관으로 조정된 ‘정보통신기반 고도화’ 관련규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를 정보통신망법으로 통합
- 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지경부 소관으로 분류된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, 표준화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은 소관부서를 방통위로 변경(안 제15~제18조, 안 제24조)
- 다. 방통위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점검, 기술지원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접속요청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업무종사자가 목적외 열람시 처벌(안 제53조)
- 라. 웹사이트에 게시된 악성프로그램이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통위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4조)
- 마. 현재 소방방재청, 해양경찰청에만 인정되는 개인 위치정보제공 요청권을 유괴·납치 등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에도 부여(안 제85조)
- 바. 개인정보 누출사고 발생시 후속피해방지를 위해 누출정보, 누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함(안 제91조)
- 사. 정보검색 결과의 부정조작을 금지하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정보검색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110조)

아. 기 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8월 25일(월)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1:15)